

교원 보수 규정

제정 : 2016. 3. 1.
개정 : 2021. 2. 15.
개정 : 2026. 2. 23.
개정 : 2026. 5.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에 따라 직위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봉급’이란 ‘본봉’에 ‘연구비’와 ‘지도비’를 합산한 통상적 지급 성격의 명목 합산액을 말하며, ‘연구비’와 ‘지도비’는 직위별, 호봉별로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제3장의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보수’란 본봉과 기타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교원성과급’이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로서 임금이 아닌 포상 성격의 금원을 말한다.

제4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휴일인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계산 기간) 보수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계산기준) ① 보수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② 보수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보수액의 1/30로 계산한다.

③ 대한불교천태종 승려인 교원의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산출된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법인의 내부지침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제2장 보수

제7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별표1에 의한다.

제8조(초임호봉) ① 신규임용자의 초임금은 경력을 참작하여 임명권자가 정한다.

②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특1호로 한다.

③ 부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당해교수의 호봉에 불구하고 특2호로 한다.

제9조(승호) ① 1호봉 승호에 필요한 기간은 근속1년으로 한다.

② 정기승호는 매년 3월1일자와 9월1일자로 한다.

제10조(휴직중의 봉급) 휴직 중인 교원의 봉급은 법인 정관 제41조에 의한다.

제11조(직위해제자의 봉급) 직위해제 중인 교원의 봉급은 법인 정관 제42조에 의한다.

제12조(퇴직자의 보수)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는 근무일수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년퇴직자, 사임퇴직자, 당월 25일 이후 퇴직자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3장 제 수당

제13조(제 수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보직수당 : 보직에 보임기간 지급되는 수당이다. <개정 2026. 2. 23.>
2. 가족수당 : 부양가족(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개정 2026. 2. 23.>
3. 장기근속수당 :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개정 2026. 2. 23.>
4. 차량보조비 : 차량비 보조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개정 2026. 2. 23.>
5. 자녀학자금 : 교원 자녀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2. 23.>
6. 학생지도 수당(비전임교원) : 비전임교원에게 학생지도 및 면담활동을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23.>
7. 논문지도비(비전임교원) : 비전임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 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23.>
8. 포상수당 :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학내 다양한 표창(장기근속표창, 공적표창, 공로상 등)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상품 포함)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23.>
9.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 : 대학의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자진 퇴직하는 자(명예퇴직)와 대학의 교원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 중에서 자진 퇴직하는 자(희망퇴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23.>
10. 초과강의료 : 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 제외), 연구원 등)이 초과로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설 2026. 2. 23.>

제14조(보직수당) 교원이 본직 이외의 보직에 보임된 경우에는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가족수당) 배우자 및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차량보조비) 교원에게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출퇴근 차량 운영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녀학자금) 교원에게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직계비속 자녀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비와 지도비

제18조(연구비)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도비) 교원에게는 학생지도 및 면담활동을 위하여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의 구성) 제18조 내지 제19조의 연구비와 지도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 명목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5장 상여금

제21조(상여금) 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일 당시 휴직 및 직위해제자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퇴직금 및 인센티브

제22조(퇴직금) 교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다. 다만, 동 연금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3조(교원성과급) 교원에게는 교육과 교육개선, 연구 및 봉사업적을 평가하여 포상금 성격의 인센티브를 매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원 급여 규정은 폐지하며,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급여 및 제수당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 ③항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